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6년 9월 29일 박한범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개정이유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운영 도모
- 소규모건축물의 부실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써의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3. 주요내용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설치(제3조)
  -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제4조)
  - 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제19조)
-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명부작성 및 관리방법 신설 (제34조)

##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별도의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별도의 건축위원회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를 존치하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하는 것과 2016년 2월 3일 개정된 「건축법」 제25조와 2016년 7월 19일 신설된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공개모집, 명부작성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